

【입소계약에 관련 사항】

1. 입소대상자 및 이용자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나.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피부질환 등의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2. 계약기간

가.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갱신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는다.

다.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 까지 갱신하겠다는 이용종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다.

3. 계약변경

사업자와 이용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변경계약서」란에 변경내역을 기재한다.

4. 이용료-급여

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시설급여(주간보호센터는 100분의 15의 재가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및 지원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나.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3등급 수가 기주의 급여를 산정한다.

다. 입소기간 중 외박(의료기간 입원 등)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등급별 1일당수가(주간보호는 월 3일에 대하여 미 이용수가)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라. 사업자는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마다 통지하고 본 계약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마. 시설급여 수가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용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 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10%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비용(2021.01.01. 기준)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71,900원
장기요양 2등급	66,710원
장기요양 3~5등급	61,520원

바. 사업자, 이용자 상호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3)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사.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이용료 - 비급여

가. 본 요양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1) 식사 재료비(1일 기준 3,000 × 3식 = 9,000원)
- (2) 간식 재료비(1일 500원)
- (3) 상급 침실료(1인실 : 1일 10,000원)
- (4) 이 미용비 무료
- (5)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비용(개인치료비, 약제비 등)

나. 사업자는 비급여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용자의 「비급여항목 대한 동의서」를 받아 비급여를 제공한다.

6. 본인부담금 합계

가. 본인부담금 합계(급여+ 비급여비용)

나.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 명세서를 제공한다.

7. 비용수납

가. 시설급여 비용은 이용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한다.

나.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 명세서를 제공한다.

8. 이용료 변경

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종사자를 포함한다.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의 해지】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1달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이용자(보호자)에게 아래 사항을 즉시 전달 및 문서를 교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이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가. 타 질환발생에 따른 요양원 협조 요청에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하였을 경우

다.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라.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 전염성 질환 발병, 정신과적인 행동장애가 현저한 치매노인,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장애(폭력, 심한 성적장애 및 정신적 이상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마.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요양서비스로서는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자의 해지】

가.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이용자 해제 시 옮겨가는 전원기관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전원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가. 사업자 또는 이용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나.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